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90호 2022. 8. 4.(목)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1103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사천시 공고 제2022-1107호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알림 --- 13
- 사천시 공고 제2022-1110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14
- 사천시 공고 제2022-1114호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
- 사천시 공고 제2022-1115호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26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사천시 고시 제2022-1103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행단체' 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및 안 제13조)

나.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 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Tel: 831-3068, FAX: 831-6031)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대행단체' 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및 안 제13조)

나.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8. 4. ~ 2022. 8.24.(20일)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협약”을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보관·판매 및 환전”을 “보관·판매·환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천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품권의 발행·유통 시스템으로 판매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써 이를 소지한 자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u> 2. <u>“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u> 3. <u>“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u> 4. <u>“가맹점”이란 상품권을 물품 및 용역의 대가로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u> 5. (생략) <p>제3조(발행 및 판매) ①·② (생략)</p>	<p>제2조(정의) ----- ----- <u>다음과</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u> 2. ----- 제6조 제1항에 따른 <u>협약</u>-- <u>보관·판매·환전 등의</u> ----- ----- ----- -----.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u>“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 5. (현행과 같음) <p>제3조(발행 및 판매) ①·② (현행과</p>

③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상품권을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② (생략)

③ 판매대행점은 매월 말 기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판매 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략)

<신설>

같음)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상품권의 발행·유통 시스템으로 판매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제1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한 날부터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제3조

제5항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행단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전통시장 지원업무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대행단체의 의무 및 협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2(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생략)

②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등록 취소일부터 10일 이내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 대행단체, 가맹

<삭 제>

제9조의2(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8조제1항-----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판매대행점-----

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할일판매 및 수수료) ① ~ ④ (생략)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

제15조(할인판매 및 수수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19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관 련 법 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사천시 고시 제2022-1107호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알림

국내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완전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로 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하고자 예고통지 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2년 8월 26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2. 8. 4.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알림
2. 공 고 기 간 : 2022. 8. 4. ~ 2022. 8. 26. (22일간)
3. 공 고 대 상 : 248너**** 외 5대

연번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명
1	248너6834	KMHDG41DBCUC514591	CHEN FANGXIN
2	28보4854	KLY3S11BRTC346560	UKTAMOV JAHONGIR
3	36다5426	KMHFV41APYA053362	EGODAPITIYE GEDARA WIJAYANTHA NALINDA
4	45루1459	KNAFB24632A076568	HOANG NGOC THUAN
5	21가1429	KNAFD52434A344085	NGUYEN VAN HAU
6	24러1222	KNAMC81ABFS039430	JIN CHENGYONG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사천시 고시 제2022 - 1110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 8. 4.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2. 8. 4. ~ 2022. 8.18.(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15너7258	K9	이*훈	2022.7.26.	대포차로 사용됨이 의심되어 운행정지 신청

4. 공 고 내 용

-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민원교통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사천시 고시 제2022 - 1114호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맞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14조제3항)
- 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5장)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67, FAX: 831-6018)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맞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14조제3항)
- 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5장)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8. . ~ 2022.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맞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제22조(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시민참여단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하는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로 공개모집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생활 속 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 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교육 참여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임기) ① 시민참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생 략)</p> <p><u>② 시장은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제14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맞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15조(평등한 인사관리) <u>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삭 제></u></p>
<p>제20조(실비변상) <u>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제21조(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삭 제></u></p> <p><u>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u></p>

<신 설>

<신 설>

운영

제22조(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민참여단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하는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로 공개모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생활 속 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 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교육 참여

<신 설>

<신 설>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임기) ① 시민참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시
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
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
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
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하여 단원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
급할 수 있다.

관 련 법 규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사천시 고시 제2022 - 1115호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난감은행 대여료 무료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난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회원가입 대상 확대 및 연회비 면제 대상 추가(안 제5조)
- 나. 대여료 명시규정 삭제(안 제9조, 별표 4)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84, FAX:831-6018)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장난감은행 대여료 무료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난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회원가입 대상 확대 및 연회비 면제 대상 추가(안 제5조)
- 나. 대여료 명시규정 삭제(안 제9조, 별표 4)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8. . ~ 2022. 8.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을 “사천시민”으로, ““사천시 장난감은행””을 “사천시 장난감은행”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장난감은행”이란 장난감 등의 물품을 무료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치) 사천시 장난감은행(이하 “장난감은행”이라 한다)은 사천시 사천읍 읍내로 52에 둔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은행”을 “장난감은행”으로, “갓는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제5조의 제목 “(회원)”을 “(회원 및 연회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은행”을 “장난감은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의 직계존속, 법정보호자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개인회원”이라 한다)
2. 사천시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및 원장(이하 “단체회원”이라 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연 20,000원
2. 단체회원: 연 30,000원

④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부모가 있는 가정

5.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6.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탈퇴할 경우 연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회원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의 제목“(연회비 납부 및 이용)”을“(대여기간 및 수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은행을”을 “장난감은행을”로, “은행의”를 “장난감은행의”로 한다.

② 장난감 등의 대여기간은 대여일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대여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 1회 2점

2. 단체회원: 1회 3점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을 “회원에게는 장난감은행의 이용을 제한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한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은행”을 “장난감은행”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90호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8조제1호 중 “사람”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盜用)한 경우
3. 대여물품을 3회 이상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했을 경우
4. 대여물품을 분실·훼손 및 파손하고,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5. 가입기간 중 3회 이상 연체 또는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6. 대여물품을 직원의 동의없이 가져간 경우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장난감”을 “대여물품”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난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사천시 장난감은행 대여물품 변상기준”을 “사천시 장난감은행 대여물품 변상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장난감 대여로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며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u>시민의 장난감 기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사천시 장난감은행”</u>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미취학 아동</u>”이란 「<u>초·중등교육법</u>」 제13조에 따라 <u>초등학교 취학 연령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u> 2. “<u>장난감 은행</u>”이란 <u>장난감 등 그 밖의 물품을 구입, 관리, 대여 및 반입하는 시설을 말한다.</u> 3. (생략) 4. “<u>수탁자</u>”란 <u>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u> <p>제3조(명칭 및 위치) <u>장난감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명칭과</u></p>	<p>제1조(목적) ----- ----- ----- ----- <u>사천시민</u>----- - <u>사천시 장난감은행</u>----- ----- -.</p> <p>제2조(정의) ----- ----- <u>다음과</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영유아</u>”란 「<u>영유아보육법</u>」 제2조제1호에 <u>따른 아동을 말한다.</u> 2. “<u>장난감은행</u>”이란 <u>장난감 등의 물품을 무료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u> 3. (현행과 같음) <p><삭 제></p> <p>제3조(위치) <u>사천시 장난감은행(이하 “장난감은행”이라 한다)은</u></p>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 3. (생략)

제5조(회원) ① 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사천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미취학 아동의 직계존속 및 법정보호자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신설>

사천시 사천읍 읍내로 52에 둔다.

제4조(기능) 장난감은행-----수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회원 및 연회비) ① 장난감은행-----.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의 직계존속, 법정보호자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개인회원”이라 한다)

2. 사천시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및 원장(이하 “단체회원”이라 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연 20,000원
2. 단체회원: 연 30,000원

④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아동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5.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6.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탈퇴할 경우 연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회원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신 설>

제6조(연회비 납부 및 이용) ① 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등의 대

제6조(대여기간 및 수량 등) <삭제>

② 장난감 등의 대여기간은 대여일

여기간과 수량 등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생략)

④ 은행을 이용하는 회원은 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2. (생략)

3. 그 밖에 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8조(회원등록 취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2. 회원탈퇴 희망자

3. 대여자료를 분실, 훼손 및 파손

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대여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 1회 2점

2. 단체회원: 1회 3점

③ (현행과 같음)

④ 장난감은행을 ----- 장난감은행의 -----.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 회원에게는 장난감은행의 이용을 제한할 ----- . 이 경우 제한기간은 1개월로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 장난감은행 -----

제8조(회원등록 취소) ----- .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 경
우

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盜用)한 경우

3. 대여물품을 3회 이상 타인에게

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5. 은행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

6.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이용자 ID를 이중 등록하는 사람

제9조(사용료 등) ① 회원은 별표 4에 따른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탈퇴할 경우 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회원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연회비 반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은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임대 또는 양도했을 경우

4. 대여물품을 분실·훼손 및 파손하고,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5. 가입기간 중 3회 이상 연체 또는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6. 대여물품을 직원의 동의없이 가져간 경우

<삭 제>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아동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5.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6.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제10조(변상 등) ①·② (생략)

③ 회원이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장난감을 반납한 경우에는 품목당 1일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제3

조에 따라 설치된 은행을 직접 운영하거나, 은행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또는 어린이 놀이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개인,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사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은행을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은행을

제10조(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대여물
품-----
-----.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난감

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및 공신력
3. 위탁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예산 등을 위탁

<삭 제>

<삭 제>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사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

자에 대하여 대여점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

<삭 제>

<삭 제>

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법령,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별표 6]

사천시 장난감은행 대여물품 변상기준(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규 정
구입 1년 미만	구매가격의 90% 변상
구입 1년 이상 ~ 2년 미만	구매가격의 70% 변상
구입 2년 이상 ~ 3년 미만	구매가격의 50% 변상
구입 3년 이상 ~ 4년 미만	구매가격의 30% 변상
구입 4년 이상	구매가격의 10% 변상

관 련 법 규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